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원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5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09일

발 의 자 : 신원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기덕, 김소영,
김춘례, 김태호, 노승재,
안광석, 이종환, 최영주,
황규복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
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
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디자인재단도 이를 적
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디자인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.(안 제15조
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19조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
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3개월” 을 “2개월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(생략)	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<u>3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2개월</u>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